

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안 건 명

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
개정조례안

2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16-43호

나. 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다. 제출일자 : 2016년 6월 2일

라. 회부일자 : 2016년 6월 7일

3.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

가. 개정사유

치매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상위법 개정 반영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, 민간위탁 수탁 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위원회 근거 마련을 통하여 치매지원

센터를 위탁하는데 공정한 업무처리와 치매 지원센터를 이용하는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「지역보건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과 「노인복지법」의 치매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「치매관리법」의 제정에 따른 근거법령 개정 (안 제1조)
- 2) 치매지원센터 위치는 행정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자 삭제 (안제2조제2항)
- 3) 치매지원센터 이용대상은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 제한규정을 삭제 (안 제4조)
- 4)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초단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수탁자의 선정기준, 선정위원회 명확화 (안 제5조의2, 제5조의3, 제5조의4, 제5조의5)
- 5) 운영위원회는 치매지원센터 주관으로 변경되어 삭제(안 제11조, 제12조, 제13조)
- 6) 기타 일부 조문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치매관리법」 [시행 2015.7.29.] [법률 제13112호, 2015.1.28.,
일부개정]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개정조례안은 2015년5월18일 「지역보건법」 의 전부개정과 2012년2월5일 시행된 「치매관리법」 의 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조항을 개정하고,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기준 등을 신설하며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치매는 노인이면 당연히 겪는 노화현상이 아니라 뇌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퇴행성 질환이므로, 조기에 검진하여 예방하고 꾸준히 진료하면 질환의 진행속도나 증상을 늦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환자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제공되지 못한 채 가족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치료대책과 사회적 인프라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.

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.